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4일, 김위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가결)

제2차 전체회의(2025.9.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위상의원)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
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

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 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그 동안 보상청구의 시효를 5차례 연장하였던 사유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손실보상 청구의 시효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지만 아직 보상이 청구되지 않은 토지(4,674천㎡, 약 3.04%)에 대해 그 시효를 다시 연장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 변경 없이 소멸시효만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신속한 토지보상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u> <u>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 다.	제1조(시행일)----- <u>공포한</u> <u>날부터</u> -----.
제2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 조치) (생 략)	제2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 조치)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을 “203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u>2023년</u> 12월 31일에 만 료된다.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 <u>2033년</u> ----- -----.